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75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최영주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안광석, 유 용,  
이은주, 정지권, 조상호,  
최기찬, 황규복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민원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서의 이관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 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정함(안 제3조)
- 라.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제3조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제1항 중 “행정(1) 부시장이 된다”를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

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을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37조의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명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  
---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삭 제>

제6조(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  
-----  
-----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민원조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략)

-----.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